

## ●국가기록원고시 제2024-5호

기록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, 개정 대상 표준명,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08월 08일

국가기록원장

### 2024년 제2차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

#### 1. 표준명

- NAK 2-1:2012(v1.1)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

#### 2. 개정 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안 및 재난관리 업무 내용 및 절차 현행화

#### 3. 주요 개정 내용

- 재난관리 업무 용어·개념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현행화
- 보호지역(제한지역, 통계구역 등)에 대한 보안대책 등 수립·시행 신설
-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 업무절차에서 신고 업무 추가
-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수립해야 하는 근무자 안전 규칙의 업무유형 및 내용에 대한 예시 상세화
- 전자기록물의 재난복구체계 구축·운영 법적 근거 정정, 자구 수정 등 미비점 보완

#### 4. 의견 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·기관은 202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(우 35208,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, 전화: 042-481-6231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,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(전화:042-481-623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(www.archives.go.kr) → 국가기록원 → 뉴스·소식 → 고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